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등에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추가하는 등, 세법 및 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의20서식 및 별지 제76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사 업 연 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		② 근거 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 세액
세 액 감 면	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외	110		
	㉒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㉓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㉔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㉕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㉖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㉗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㉘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㉙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㉚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㉛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㉝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㉞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㉟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㊲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㊳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㊵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㊶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㊷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㊸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㊹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㊺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㊻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㊽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㊾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세 액 감 면	㉓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㉔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㉕ 해양박람회특구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㉖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㉗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㉘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㉙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㉚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㉛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㉜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㉝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㉞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㉟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㊲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㊳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㊴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D1		
	㊵ 소계		170		
세 액 공 제	㉕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101		
	㉖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㉗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㉙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㉚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㉛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㉝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㉞ 소계		180		
	㉟ 합계(㉕ + ㉞)		11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분		② 근거 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세액
세 액 감 면	⑮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111		
	⑯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⑲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⑳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㉑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㉒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㉓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㉔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㉕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 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㉖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㉗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㉙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㉚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㉛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13H		
	㉝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㉞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㉟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 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㊱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㊲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 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㊳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 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㊴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 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㊵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 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㊶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 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㊷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 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㊹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 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㊺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13V		
	㊻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C1		
	㊼ 소계		130		

① 구분		② 근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 액
세 액 공 제	19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19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19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195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196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197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	18R			
	198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199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200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20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202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20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204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20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206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207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208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209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210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21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212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21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2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2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B			
	216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2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218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219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22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22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22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22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224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S			
	225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4			
	226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5			
	227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228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22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230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231 전자기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232 전자기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23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234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235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236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0			
	237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238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 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23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24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241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 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242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243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	1F1			

세 액 공 제	㉔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㉕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㉖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㉗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86			
	㉘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㉙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X			
	㉚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Y			
	㉛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Z			
	㉜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1			
	㉝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2			
	㉞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3			
	㉟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9			
	㊱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B7			
	㊲ 소계		149			
	㊳ 합계 (㉙ + ㉛)		150			
㊴ 공제감면세액 총계 (㉛ + ㉟)			151			
㉞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㉟ 간주·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189				
㊱ 간접투자회사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의2	1E5				

작성방법

-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5까지)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 ④·⑦ 감면(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 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및 부표 5의2부터 부표 5의5까지)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 ㉘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㉞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및 ㉟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㉞란에,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㉟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㉛란 중 ④ 감면(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㉞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㉛란, ㉜란 또는 ㉞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㉛란, ㉜란 또는 ㉞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㉛란, ㉜란 또는 ㉞란의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비·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구 공제감면코드: 132).
- ㉟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㉞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㉞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㉞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 ②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구분	근거 법조항	⑫ 계산기준	코드	⑬ 계산 명세	⑭ 공제 대상세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 12. 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세 · 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 · 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처리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 104조의 14	(전년 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 × 3/100(중소기업은 5/100)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 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8제1항	법 제10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8제2항	법 제11조 연구 · 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 104조의 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8제4항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조의 25	'13. 1. 1. ~ '12. 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 1. 1. ~ '16. 12. 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 1. 1. ~ '19. 12. 31.: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 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 1. 1. ~ '22. 12. 31.: 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 항	산출세액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매출액] 또는 산출세액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5/100) / 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램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분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 × [(매입자납부의금및수급한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의 금및수급한계금액) × 50/100] / (금및수급한계금액 또는 산출세액 × [(매입자납 부의금및수급한계금액 × 5/100) / (금및수급한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 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200만원 한도)	10C		
이스포츠타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이스포츠타워운영비용 × 10/100	1F1		
소재 · 부품 · 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 · 부품 · 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출자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3%	1B7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5/7.5, 중소10)/100, 신성장 · 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9, 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 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 중소30)/100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25.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 · 원천기술)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 · 원천기술)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B3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13Z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1B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	1B6		
합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⑩ 계	⑫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⑬ 그 밖의 사 유로 인한 미 공제액	⑭ 공제세액 (⑫-⑬-⑭)	⑮ 소계	⑯ 이월액 (⑮+⑮- ⑮-⑮)
		당기분	이월분	⑮ 당기 분	⑮1차연도	⑮2차연도	⑮3차연도	⑮4차연도	⑮5차연도	⑮6차연도	⑮7차연도	⑮8차연도	⑮9차연도	⑮10차연도					
소계																			
소계																			
합계															※				

작성방법

- ⑮ 구분란: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 ⑮ 사업연도란: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 ⑮ 당기분란: ⑮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 ⑮ 이월분란: ⑮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⑮ 이월액을 적습니다.
- ⑮ 당기분란: 당기분 세액을 적고, ⑮란~⑮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⑮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⑮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⑮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⑮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업 연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 비과세	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⑩란 해당 금액
	㉒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606		
⑥ 소득 공제	㉓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⑧란 해당 금액
	㉔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㉕			()	
	㉖		458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액 감면	㉗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㉘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㉙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㉚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㉛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㉝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㉞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㉟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㊲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㊳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㊴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㊵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㊶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㊷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㊹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㊺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㊻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㊽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㊾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⑭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⑭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⑭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⑭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⑭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⑭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⑭		164	

① 구분	② 감면내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④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⑨ 세액 공제	①49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①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①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①5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①53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①54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①5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①5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①57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①5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①59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①6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①61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①6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①6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①64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①6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①6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①6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①68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①6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①7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 액공제	제29조의2	14S		
	①7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①72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①7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①7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①7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①7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①77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①78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①79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①8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①81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①8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 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①83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0		
	①8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①85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①86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①87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 조의30	18M		
	①8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 조의32	10C		
	①89 이스포츠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 조의35	1F1		
	①90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①9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①9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①93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①94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①95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①96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①97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①98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①99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②00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제24조	13Z		
	②01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제24조	1B9		
	②0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②0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②04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분	금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⑨ 공제세액	비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감면(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	18S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성 방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㉓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㉓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근거 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사업 연도	. . . ~ . . .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금 산입액 조정	한도액			④ 회사 계상액	⑤ 한도초과액 (④-③)	⑥	⑦
	① 환급액	② 추정보험금 상당액	③ 계 (①+②)				
익금 산입액 조 정	⑧ 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액	⑨ 기중준비금 환입액	⑩ 준비금 부인 누계액	⑪ 당기설정 준비금 보충액	⑫ 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⑬ 회사 환입액	⑭ 과소환입 · 과다환입 (⑬-⑫)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금 산입액 조정	⑮ 「법인세법 시행령」 제 57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⑲ 한도초과액 (⑮ - ⑮)	
			⑮ 당기전입액	⑮ 당기환입액	⑮ 계 (⑮ + ⑮)		
익금 산입액 조정	⑳ 손금 산 입 연 도	㉑ 설정액	㉒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㉓ 기 중 준 비 금 환입액	㉔ 준비금 부인누계 액	㉕ 차감액 (㉒ - ㉓ - ㉔)	
	손금 산입 연도	준비금사용액			㉖ 환입할 금액 (㉕ - ㉖)	㉗ 회사 환입액	㉘ 과소환입 · 과다환입 (㉗ - ㉘)
		㉑ 1차연도	㉒ 2차연도	㉓ 3차연도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금 산입액 조정	한도액			③⑥ 회사계상액	③⑦ 한도초과액 (③⑥-③⑤)	
	③③ 적립대상보험료의 합 계 액	③④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③⑤ 보험종목별 적립 기준금액(③③×③④)			
누계 한도액 조정	③⑧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③⑨ 기중준비금 환입액	④⑩ 준비금 부 인 누 계 액	④① 회사계상 누계액 (③⑧ - ③⑨ - ④⑩)	④② 누계한도액 [③③×50(40) /100]	④③ 한도초과액 (④①-④②)

나.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④④ 한도액 (③⑤×90/100)	④⑤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④⑥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④⑦ 한도초과액 (④⑤-④④)

4.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 (익금) 산입액	④⑧ 해약환급금	④⑨ 미경과보험료	⑤⑩ 책임준비금	⑤① 특별계정부채의 계약자적립금
	⑤②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⑤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⑤④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⑤⑤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
	⑤⑥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⑤⑦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⑤⑧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	⑤⑨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

나.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계산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적립하는 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

작성 방법

1. ① 환급액란: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추정보험금 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용한 금액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용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⑭ 당기전입액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⑮ 설정액란: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⑯ 기중준비금환입액란: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7. ⑰ 차감액란: ⑫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⑬기중준비금 환입액과 ⑭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회사환입액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⑲ 과소환입·과다환입란: 과소환입의 경우(⑱<⑳)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⑱>⑳)에는 ⑮준비금 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㉑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란의 나.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2. ㉒ 한도액란: ㉓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란에 적힌 금액의 90/100을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13. ㉓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란: 직전사업연도에 신고한 ㉔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㉔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㉕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㉔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란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 ㉖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환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㉗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란: ㉔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란의 금액이 ㉕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란의 금액보다 크면 0을, 작으면 ㉔란의 금액과 ㉕란의 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청산인성명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㉑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해당 [] 미해당
⑧ 업 태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확정 [] 중간
⑪ 해산등기일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 직전 사업연도		⑭ 의제 사업연도	

구 분	법 인 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⑮ 과 세 표 준			
⑯ 세 율			
⑰ 산 출 세 액			
⑱ 가산세액			
⑲ 공 제 세 액			
⑳ 차감납부세액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해산의 경우]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1. ㉔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㉔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㉔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4. ㉔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5. ㉔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6. ㉔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㉔, ㉔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㉔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㉔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9. 2010.7.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작성 방법

1. ㉓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2. ㉔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㉕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특별재난지역)	44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4. ㉖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액
구분	금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분	⑦ 감면내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⑩ 비과세	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606		
⑪ 소득공제	⑪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⑪란 해당 금액
	⑪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458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⑬ 세액감면	⑬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⑬란 해당 금액
	⑬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97		
	⑬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	198		
	⑬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D2		
	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4호	1D3		
	⑬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D4		

⑬ 세액
감면

⑫6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6호	1D5	
⑫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7호	1D7	
⑫8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D6	
⑫9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D8	
⑬0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10호	1D9	
⑬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⑬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⑬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⑬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⑬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⑬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⑬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별지 제8호서식(감)의 ④란 해당 금액
⑬8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⑬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3R	
⑭0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E1	
⑭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E2	
⑭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E3	
⑭3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E4	
⑭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⑭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⑭6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⑭7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⑭8			164	

⑭ 세액 공제	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⑮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⑮ 대중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⑮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⑮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⑮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⑮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⑮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⑮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⑮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⑮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⑮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⑮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⑮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⑮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⑮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⑮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⑮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⑮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⑮ 초연결 네트워킹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⑮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⑮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⑮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⑮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⑮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⑮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⑮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⑮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⑮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⑮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⑮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⑮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⑮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한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⑮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⑮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⑮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⑮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⑮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 조 의 30	18M		
	⑮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 조 의 32	10C		
	⑮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 조 의 35	1F1		
	⑮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⑮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⑮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⑮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⑮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⑮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⑮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⑮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Z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9		
	⑮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⑮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⑮		165		
⑮ 감면세액 합계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 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① 과세표준		세율	② 세액
구분	금액	20%	
③ 법인세 감면세액			
④			
⑤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⑥ 구분	⑦ 감면내용	⑧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⑨ 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⑩ 비과세	⑩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604	()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⑩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⑩③		606		
⑪ 소득공제	⑪④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별지 제7호서식 ⑪란 해당 금액
	⑪⑤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⑪⑥				
	⑪⑦		458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⑬ 세액감면	⑬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감)의 ④란 해당 금액
	⑬⑨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⑬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⑬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⑬⑫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13B		
	⑬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⑬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⑬⑮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⑬⑯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⑬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⑬⑱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⑬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⑬㉒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⑬㉓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⑬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⑬㉕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⑬㉖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⑬㉗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126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6호	1D5	
127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7호	1D7	
128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D6	
129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D8	
130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10호	1D9	
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13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13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13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13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13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13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별지 제8호서식(감)의 ④란 해당 금액
138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13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	13R	
140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3호	1E1	
14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5호	1E2	
14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8호	1E3	
143	평화경제특구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 제9호	1E4	
14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14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46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147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48			164	

⑭ 세액 공제	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⑮ 상생결계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⑮ 대중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⑮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⑮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⑮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⑮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⑮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⑮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⑮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⑮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⑮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⑮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⑮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⑮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⑮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⑮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⑮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⑮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⑮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⑮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⑮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⑮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⑮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⑮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⑮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⑮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⑮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⑮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⑮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⑮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⑮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⑮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재학중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⑮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⑮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⑮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⑮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⑮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0	18M		
	⑮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 104조 의 32	10C		
	⑮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 104조 의 35	1F1		
	⑮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⑮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⑮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⑮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⑮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⑮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⑮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⑮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제24조	13Z		
	⑮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	제24조	1B9		
	⑮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⑮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⑮		165		
⑮ 감면세액 합계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③ 법인세 감면세액란: ⑮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⑫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⑨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⑩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⑪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4. 그 밖에 ⑩ 비과세, ⑪ 소득공제, ⑬ 세액감면 및 ⑭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근거 조항 중 “구” 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